|  |  |  |
| --- | --- | --- |
|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국세발[2011]5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2010년 5월, 국가세무총국은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진일보 강화에 대한 통지》(국세발[2010]54호)를 발표하였고, 각급 세무기관이 유효한 조치를 취하고, 관철 실행하여 바람직한 효과를 거두었다. 중국공산당 제17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년 계획 제정에 대한 건의》(이하 《건의》)와 제11회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비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년 계획 개요》(이하 《개요》) 중 세수의 수입배분 조정에 대한 관련 요구에 근거하여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업무 진일보 완벽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새로운 형국에서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에 대한 주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한다.  당 중앙과 국무원은 수입분배 문제를 중시하고, 수입분배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는 수입분배를 조정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으므로, 《건의》는 "수입분배에 대한 세수의 조정역할을 강화하고, 과다수입을 효과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요》는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메커니즘을 완벽화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업무 완벽화는, 세수의 수입분배 조정의 직능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사회의 공정과 정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각급 세무기관은 당 중앙과 국무원의 배치와 요구를 열심히 관철 실행해야 하며,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강화를 현 단계와 향후 일정기간의 주요 업무로 정하고, 징수관리 기반을 진일보 강화하며, 징수관리 수단을 완벽화하고, 관리와 서비스 방식을 혁신하여, 합리적이고 질서적인 수입분배구도의 형성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고소득자의 주요 소득항목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부단히 완벽화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국세발[2010]54호 문건의 규정을 계속적으로 관철 실행하고, 비급여성 소득을 위주로, 법에 따라 고소득자 주요 소득항목에 대한 징수관리를 진일보 강화해야 한다.  (1) 재산양도소득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  가. 자연인 주주의 지분(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징수관리 완벽화  ① 공상행정관리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개인의 비상장회사 지분양도소득에 대한 징수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취득가액 또는 저가의 지분양도 추계업무를 위주로 완벽화하고, 전자등록부를 건립하여, 지분양도 거래가격과 세비정황을 기록하고, 재산원가치 관리를 강화한다.  ② 개인의 대외투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상장회사의 상장 전 증자, 지분양도, 전략투자자 유치 등 행위의 세무사항을 위주로 감독관리하여, 세금유실을 방지한다.  ③ 관련 부처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개인의 상장회사 보호예수주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업무를 적극적으로 완벽화한다.  나. 건물양도소득과 경매소득의 징수관리 강화  ① 관련 부처와 협력을 완벽화하고, 건물양도소득 징수관리를 강화하며, 조사확인 징수조건에 부합될 경우, 조사확인 징수를 실행하며; 확실히 조사확인 징수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추계징수를 엄격화한다.  ② 본 지역 경매단위와 연계를 강화하고, 경매 소득세원 정보를 파악하며, 경매단위가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독촉한다.  다. 기타 형식의 재산양도소득 징수관리를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점적으로 개인이 감정평가 증가액의 비화폐성 자산으로 대외투자하여 취득한 지분(주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징수관리사슬을 완벽화한다.  (2) 이자, 배당금소득 징수관리 강화  가. 기업의 배당금 분배 세금 원천징수 관리를 강화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자산평가증가액에 의한 등록자본(자본금)과 주식 증자에 대한 징수관리를 중대시하여, 징수관리 맹점을 보완한다.  나. 투자자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이 법인기업 소비지출과 차입금을 계상한 경우, 일상세원관리와 검사를 열심히 추진하고, 관련 소득은 법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 관련 금액이 비교적 클 경우, 비용증빙의 진실성과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  다. 연속흑자가 발생하나 배당금을 분배하지 않거나 또는 기업소득세를 추계징수하는 기업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금 등 소득에 대해 중점세원 관리를 실시하고, 관련 징수관리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 말소 시 개인투자자 세수청산 관리를 강화한다.  라. 기업 및 기타 조직이 개인으로부터 대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 관련 기업소득세 손금산입증빙 확인조사 등 방식을 통해, 기업 또는 관련 조직이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독촉 지도해야 한다.  (3) 생산경영소득 징수관리 완벽화  가. 규모가 비교적 큰 개인독자기업과 동업기업,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소득에 대한 장부기준과세 관리를 위주로 강화하며; 장부기준과세를 실행하기 어렵다면, 법에 따라 추계징수를 엄격히 실행한다. 변호사사무소와 회계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자산평가 및 부동산가격평가 등 검증형 중개기구는, 개인소득세 추계징수를 실행하지 못한다.  나. 개인독자기업과 동업기업이 지분(주식), 선물, 펀드, 채권, 외환, 귀금속, 자원채굴 및 기타 투자품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전부 생산경영소득에 산입하고,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다. 개인독자기업과 동업기업,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 자금을 투자자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및 관계자의 소비성지출과 재산성 지출에 사용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징수한다.  라. 개인독자기업과 동업기업,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의 말소등기 관리를 강화하고, 말소등기 전, 주관세무기관은 자발적으로 유효조치를 취하여 관련 세무사항을 잘 처리해야 한다. 3. 고소득 업종과 계층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계속적으로 강화한다.  (1) 비급여성 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계층의 징수관리 강화  회사의 지분을 다량 보유하거나 거액의 투자수익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및 광산자원 투자, 사모펀드, 신탁투자 등 활동을 수행하는 고소득계층을 위주로, 중점세원 관리를 실행한다.  (2) 고소득업종 급여소득 징수관리업무 완벽화  가. 고소득업종 급여소득 원천징수납부 관리를 강화한다. 고소득업종 기업의 중/고위관리인원의 각종 급여소득, 특히 각종 보너스와 보조금, 스톡옵션, 제한성 주식 등 장려소득을 위주로 관리한다.  나. 고소득업종 기업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소득총액과 기업소득세 신고서 중 급여비용지출총액의 대조를 강화하고,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 연동관리를 강화한다.  다. 여러 가지 세금계산서로 개인소득을 상계하여, 개인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세수징수관리법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3) 납세인이 2곳 또는 2곳 이상에서 취득한 급여소득은, 명세신고데이터 등 정보에 대한 총괄대조를 통해, 납세인의 자진신고납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4) 금액이 비교적 큰 노무보수소득에 대한 징수관리 완벽화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부처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관련 노무보수 지급정보를 즉시 획득하고, 금액이 비교적 높은 노무보수소득에 대한 징수관리를 위주로 강화한다.  나. 개인이 영화•드라마 연기 및 광고 촬영, 전속모델 등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의 원천통제관리를 강화하고, 관계자가 연예인작업실 및 노무회사, 기타 형식의 기업 또는 조직을 설립하여 취득한 공연수입의 소득세 징수관리업무를 위주로 완벽화한다.  (5) 고소득 외국국적개인이 취득한 소득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  가. 외국국적개인 관리당안을 진일보 건립하고 보완하며, 상이한 국가와 상이한 업종, 상이한 직위의 급여표준을 파악하여, 중국 경내 원천 및 경외기구 지급소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세수정보교환과 대외지급세무증명 심사 등의 정보를 충분히 이용하여,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지만 주거 5년 이상 개인의 경외소득에 대한 세수징수관리를 강화한다.  나. 외국국적개인이 종속적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에 대한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기지가 부담하는 외국국적개인 보수에 대한 감독관리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세수협정의 남용을 방지한다.  4. 고소득자 과세대상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전화한다.  세무기관 내부와 외부의 세무정보 획득 및 통합 응용을 강화한다. 다양한 세무정보 분석과 대조를 통해, 고소득자 경제활동 및 세원분포 특징, 수입의 획득규칙 등 정황을 조사하고,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대응적으로 강화한다.  (1) 세원관리기반 강화  가. 세무총국의 통일배치와 요구에 따라, 개인소득세 관리정보시스템 등 수단의 홍보 응용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 전원전액원천징수 명세신고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 납세당안을 건립한다.  나. 연소득 12만RMB 이상 납세인의 자진신고납세에 대한 일반화 관리를 추진하고, 신고데이터 품질을 부단히 제고하여, 보충납부세액 신고관리를 강화한다.  다. 자진신고납세와 전원전액원천징수신고서 정보 교환조사 메커니즘을 점차적으로 건립하고 건전화하며, 고소득자 세원관리조치를 완벽화한다.  라. 국세국과 지세국은 밀접하게 협력하여, 정보 전달과 피드백 메커니즘을 건전화하며, 징수관리 협력을 형성한다.  (2) 과세협력 메커니즘 건립  가. 세수징수관리법 규정에 근거, 세무기관은 공안, 공상, 은행, 증권, 부동산관리, 외환관리,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관련 부처 및 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세무정보를 공유하며, 부속조치를 완벽화한다.  나. 지방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세무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건전화하며, 관련 부처의 과세협력 책임과 의무를 명확화한다.  5. 납세서비스와 납세평가, 특정항목검사를 심층적으로 추진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납세평가를 강화하고, 특정항목검사를 강화하며, 납세인의 법에 따른 성실신용 납세를 촉진해야 한다.  (1) 납세서비스 최적화  납세인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신고납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납세인의 세무요구를 조사하여, 회신자문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법홍보와 정책지도를 실행하여, 고소득자의 자발신고 및 법에 따른 납세를 유도한다. 또한 세무총국의 관련 업무요건을 관철 실행하고, 납세인을 위한 납세완료증명의 발급업무를 지속적으로 완벽화한다. 납세인을 위한 수입 및 납세정보 비밀유지 관련 규정을 엄수하여, 납세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유지한다.  (2) 일상세원관리와 감정평가 강화  고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일상 세원관리를 견지하며,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용하여, 감정평가지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며, 감정평가방법을 혁신하고, 납세평가를 활발히 추진한다. 납세평가에서 발견한 의문사항에 대해 추적 확인조사와 인터뷰를 실행해야 하며 납세인의 세수위법행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즉시 조사부처에 이송하여 입안 검사해야 한다.  (3) 개인소득세 특정항목 검사업무 완벽화  세무총국의 일괄배치에 따라, 개인소득세 특정항목검사를 열심히 실행한다. 동시에, 현지 징수관리 현황을 적용하여 고소득자가 비교적 집중된 일부 업종을 선정하고, 특정항목검사를 완벽화한다. 세정, 징수관리, 조사 등 부처의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위법단서를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고소득자 개인소득세에 대한 징수관리업무를 완벽화하고, 세수업무를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해야 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지방정부에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각 분야의 지원과 협력을 얻는다. 본 통지의 요지에 근거하고 현지 현황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한다. 기초업무 강화, 관리방식 혁신, 징수관리수단 완벽화, 세법홍보 완벽화의 유효조치를 진일보 검토하고,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국가세무총국 발표  2011년 4월 15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切实加强高**  **收入者个人所得税征管的通知**  国税发[2011]50号  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  　　2010年5月，国家税务总局下发了《关于进一步加强高收入者个人所得税征收管理的通知》（国税发〔2010〕54号），各级税务机关采取有效措施，认真贯彻落实，取得积极成效。根据党的十七届五中全会通过的《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的建议》（以下简称《建议》）和十一届全国人大四次会议批准的《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以下简称《纲要》）对税收调节收入分配的有关要求，现就进一步做好高收入者个人所得税征管工作通知如下：  　　一、充分认识新形势下加强高收入者个人所得税征管的重要意义  　　党中央、国务院对收入分配问题高度重视，强调要合理调整收入分配关系。税收具有调节收入分配的重要功能，《建议》要求“加强税收对收入分配的调节作用，有效调节过高收入”。《纲要》提出要“完善个人所得税征管机制”，“加大对高收入者的税收调节力度”。做好高收入者个人所得税征管工作，对于有效地发挥税收调节收入分配的职能作用，促进社会公平正义与和谐稳定，具有重要意义。各级税务机关要认真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的部署和要求，将加强高收入者个人所得税征管作为当前和今后一个时期的一项重点工作，进一步强化征管基础，完善征管手段，创新管理和服务方式，为加快形成合理有序的收入分配格局做出积极努力。  　　二、不断完善高收入者主要所得项目的个人所得税征管  各级税务机关要继续贯彻落实国税发〔2010〕54号文件规定，以非劳动所  得为重点，依法进一步加强高收入者主要所得项目征管。  　　（一）加强财产转让所得征管  　　1.完善自然人股东股权（份）转让所得征管。  　　（1）积极与工商行政管理部门合作，加强对个人转让非上市公司股权所得征管。重点做好平价或低价转让股权的核定工作，建立电子台账，记录股权转让的交易价格和税费情况，强化财产原值管理。  　　（2）加强个人对外投资取得股权的税源管理，重点监管上市公司在上市前进行增资扩股、股权转让、引入战略投资者等行为的涉税事项，防止税款流失。  　　（3）与相关部门密切配合，积极做好个人转让上市公司限售股个人所得税征管工作。  　　2.加强房屋转让所得和拍卖所得征管。  　　（1）搞好与相关部门的配合，加强房屋转让所得征管，符合查实征收条件的，坚持实行查实征收；确实不符合查实征收条件的，按照有关规定严格核定征收。  　　（2）加强与本地区拍卖单位的联系，掌握拍卖所得税源信息，督促拍卖单位依法代扣代缴个人所得税。  　　3.抓好其他形式财产转让所得征管。重点是加强个人以评估增值的非货币性资产对外投资取得股权（份）的税源管理，完善征管链条。  　　（二）深化利息、股息、红利所得征管  　　1.加强企业分配股息、红利的扣缴税款管理，重点关注以未分配利润、盈余公积和资产评估增值转增注册资本和股本的征管，堵塞征管漏洞。  　　2.对投资者本人及其家庭成员从法人企业列支消费支出和借款的，应认真开展日常税源管理和检查，对其相关所得依法征税。涉及金额较大的，应核实其费用凭证的真实性、合法性。  　　3.对连续盈利且不分配股息、红利或者核定征收企业所得税的企业，其个人投资者的股息、红利等所得，应实施重点跟踪管理，制定相关征管措施。同时，加强企业注销时个人投资者税收清算管理。  　　4.对企业及其他组织向个人借款并支付利息的，应通过核查相关企业所得税前扣除凭证等方式，督导企业或有关组织依法扣缴个人所得税。  　　（三）完善生产经营所得征管  　　1.重点加强规模较大的个人独资、合伙企业和个体工商户的生产经营所得的查账征收管理；难以实行查账征收的，依法严格实行核定征收。对律师事务所、会计师事务所、税务师事务所、资产评估和房地产估价等鉴证类中介机构，不得实行核定征收个人所得税。  　　2.对个人独资企业和合伙企业从事股权（票）、期货、基金、债券、外汇、贵重金属、资源开采权及其他投资品交易取得的所得，应全部纳入生产经营所得，依法征收个人所得税。  　　3.将个人独资企业、合伙企业和个体工商户的资金用于投资者本人、家庭成员及其相关人员消费性支出和财产性支出的，严格按照相关规定计征个人所得税。  　　4.加强个人独资、合伙企业和个体工商户注销登记管理，在其注销登记前，主管税务机关应主动采取有效措施处理好有关税务事项。  　　三、继续加强高收入行业和人群的个人所得税征管  　　（一）加强以非劳动所得为主要收入来源人群的征管  　　密切关注持有公司大量股权、取得大额投资收益以及从事房地产、矿产资源投资、私募基金、信托投资等活动的高收入人群，实行重点税源管理。  　　（二）做好高收入行业工薪所得征管工作  　　1.深化高收入行业工薪所得扣缴税款管理。重点关注高收入行业企业的中高层管理人员各项工资、薪金所得，尤其是各类奖金、补贴、股票期权和限制性股票等激励所得。  　　2.加强高收入行业企业扣缴个人所得税的工资、薪金所得总额与企业所得税申报表中工资费用支出总额的比对，强化企业所得税和个人所得税的联动管理。  　　3.对以各种发票冲抵个人收入，从而偷逃个人所得税的行为，严格按照税收征管法的规定予以处罚。  　　（三）对纳税人从两处或两处以上取得工资、薪金所得，应通过明细申报数据等信息汇总比对，加强纳税人自行申报纳税管理。  　　（四）完善数额较大的劳务报酬所得征管  　　1.督促扣缴义务人依法履行扣缴义务，与有关部门密切合作，及时获取相关劳务报酬支付信息，重点加强数额较大劳务报酬所得的征管。  　　2.加强对个人从事影视表演、广告拍摄及形象代言等获取所得的源泉控管，重点做好相关人员通过设立艺人工作室、劳务公司及其他形式的企业或组织取得演出收入的所得税征管工作。  　　（五）加强高收入外籍个人取得所得的征管  　　1.进一步建立和充实外籍个人管理档案，掌握不同国家、不同行业、不同职位的薪酬标准，加强来源于中国境内、由境外机构支付所得的管理。充分利用税收情报交换和对外支付税务证明审核等信息，加强在中国境内无住所但居住超过5年的个人境外所得税收征管。  　　2.加强外籍个人提供非独立劳务取得所得的征管，抓好对由常设机构或固定基地负担外籍个人报酬的监管，防范税收协定滥用。  　　四、建立健全高收入者应税收入监控体系  　　加强税务机关内部和外部涉税信息的获取与整合应用。通过各类涉税信息的分析、比对，掌握高收入者经济活动和税源分布特点、收入获取规律等情况，有针对性地加强高收入者个人所得税征管。  　　（一）强化税源管理基础  　　1.按照税务总局的统一部署和要求，通过推广应用个人所得税管理信息系统等手段，加强扣缴义务人全员全额扣缴明细申报管理，建立健全个人纳税档案。  　　2.推进年所得12万元以上纳税人自行纳税申报常态化管理，不断提高申报数据质量，加强申报补缴税款管理。  　　3.逐步建立健全自行纳税申报和全员全额扣缴申报信息交叉稽核机制，完善高收入者税源管理措施。  　　4.国税局和地税局密切配合，健全信息传递和反馈机制，形成征管工作合力。  　　（二）建立协税护税机制  　　1.根据税收征管法的规定，加强税务机关与公安、工商、银行、证券、房管、外汇管理、人力资源和社会保障等相关部门与机构的协作，共享涉税信息，完善配套措施。  　　2.积极争取地方政府的支持，建立健全政府牵头的涉税信息共享机制，明确相关部门协税护税的责任和义务。  　　五、深入开展纳税服务、纳税评估和专项检查  　　各级税务机关要通过改进纳税服务，深化纳税评估，加强专项检查，促进纳税人依法诚信纳税。  　　（一）不断优化纳税服务  　　积极为纳税人提供多渠道、便捷化的申报纳税服务。了解纳税人的涉税诉求，提高咨询回复质量和效率。有针对性地对高收入者进行税法宣传和政策辅导，引导其主动申报、依法纳税。认真贯彻落实税务总局有关工作要求，继续做好为纳税人开具完税证明工作。严格执行为纳税人收入和纳税信息保密的有关规定，维护纳税人合法权益。  　　（二）切实加强日常税源管理和评估  　　坚持开展高收入者个人所得税日常税源管理，充分利用相关信息，科学设定评估指标，创新评估方法，积极开展纳税评估。对纳税评估发现的疑点，应进行跟踪核查、约谈；发现纳税人涉嫌税收违法行为的，应及时移交稽查部门立案检查。  　　（三）扎实做好个人所得税专项检查工作  　　按照税务总局的统一部署，认真开展个人所得税专项检查。同时，结合本地征管实际，选取部分高收入者比较集中的行业，切实搞好专项检查。加强税政、征管、稽查等部门的协调配合，及时提供违法线索，依法严厉查处。  　　各级税务机关要加强组织领导，认真做好高收入者个人所得税征管工作，并将其作为税收工作考核的重要内容。主动向地方政府汇报，加强与相关部门的沟通，争取各方面的支持和配合。根据本通知精神，结合实际制定具体实施方案。进一步研究强化基础工作、创新管理方式、完善征管手段、搞好税法宣传的有效措施，不断提高个人所得税征管水平。  　　 　　国家税务总局  　　 二○一一年四月十五日 |